

**2023년 농식품공무원교육원
종합감사 결과 공개문**

2024. 2.



**농림축산식품부
감사관실**

I. 감사실시 개요

☐ 감사근거

-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19조(자체감사계획의 수립·실시) 및 제21조(실지감사)의 규정

☐ 감사목적

-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기관운영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

☐ 감사기간 및 인원

- (기간) 2023. 11. 6. ~ 11. 17.(10일간)
- (인원) 감사담당관 외 6명

☐ 감사대상

- 농식품공무원교육원

☐ 감사범위

- 최근 3년간('20~'23.10월 현재) 기관 운영 및 직무역량 교육, 농업인 리더교육 등 인재양성 교육사업 전반

II. 감사결과

1	식당 운영 회계처리 미흡		
처분요구	통보	관계기관	운영지원과

- 「국가재정법」 및 「세입·세출외거래 회계처리지침」에 따른 예산총계주의 원칙 및 수입대체경비 기준에 따라 교육훈련비는 세입조치 하고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현금 등은 운영하지 않아야 하나,
- 교육훈련비 중 교육비 및 합숙비만 수입대체경비로 세입조치하고, 식비는 교육원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식당운영단 계좌로 입금하는 등 국가회계 절차에 적합하지 않게 운영

농식품공무원교육원

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식당을 운영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으로 편성하고 교육생 납부 식비는 세입조치 하는 등 「국가재정법」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방안 마련토록 요구 (통보)

2	청사 소방안전관리 미흡		
처분요구	통보(2)	관계기관	운영지원과

- 「소방안전관리규정」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책임자는 월 2회 이상 전기.소화기 및 소방기구의 정비 상태와 유사시 활용여부 등을 점검하고, 화재 발생시 중요문서와 물품의 안전지출 순서와 장소를 미리 지정해야 하나,

- 소방안전진단을 월 1회 실시하고, 화재 발생시 중요문서와 물품의 안전 지출 순서 및 장소를 미지정

* 「화재예방방법 시행규칙」 제10조 제1항은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을 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원은 자체규정에서 월 2회로 규정

○ 화재예방법에 따라 피난계획을 수립할 때 각 거실에서 옥외로 이르는 피난 경로, 피난약자 및 피난약자를 동반한 피난 동선 등을 포함하여야 하나

- 피난약자를 동반한 피난보조요원 미지정, 피난경로 지정시 사무실, 강의실, 생활관 등에서 옥외 피난장소까지의 피난경로 누락

농식품공무원교육원

① 「농식품공무원교육원 소방안전관리규정」제6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책임자의 소방시설 점검을 월2회 이상 실시하거나 합리적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, 같은 규정 제10조에 따라 화재 발생시 중요문서와 물품의 안전 지출 순서와 장소 지정 조치 요구 (통보)

②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에 따라 피난계획에 피난약자를 동반한 피난보조요원을 지정하고, 피난 동선에 별도로 사무실, 강의실, 생활관 등에서 옥외 피난장소까지의 피난경로 포함 요구 (통보)

3	업무추진비 집행.관리 미흡		
처분요구	통보	관계기관	운영지원과

- ‘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’에 따라 업무추진비(240목)를 집행할 때에는 업무추진비의 성격에 따라 사업추진비(240-01목)와 관서업무추진비(240-02목)를 구분하여 집행하여야 하나,
- 사업추진비와 관서업무추진비를 구분 없이 집행

농식품공무원교육원

업무추진비 예산을 집행할 때 사업추진비와 관서업무추진비를 그 목적과 용도에 맞게 구분하여 집행.관리하도록 조치 요구 (통보)

4	공무원교육상기금 집행.관리 미흡		
처분요구	통보	관계기관	운영지원과

- ‘2023년도 교육상기금 운용계획’에 따라 교육상기금(재원 : 대통령특별지원금)의 시상금은 분야별 세부 지급 기준에 명시된 대상 과정에 지급하여야 하나,
- 참여형 교육 우수자에게 지급한 시상금 중 일부를 대상과정이 아닌 과정의 교육우수자에게 시상

농식품공무원교육원

교육상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매년 수립하는 분야별 세부지급기준을 면밀히 검토하고, 기준과 목적에 맞게 교육상 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 요구 (통보)

5	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운영·관리 미흡		
처분요구	통보, 개선	관계기관	운영지원과

- CCTV 운영·관리시 「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」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유출 방지 등을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계획 수립, 내부 통제시스템 구축 등 관리책임자의 업무를 이행하고, 지침 개정 시 이를 공개하여야 하나 미이행
 - CCTV 추가로 설치할 경우 「교육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규정」에 따라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리 및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나,
 - 사전의견수렴을 실시하지 않았고, 관리 및 운영실태 점검은 2023. 3. 9. 한 차례만 실시
- * 단, ‘개인정보위원회 가이드라인’(2021.04.14.)에서는 동일한 목적으로 CCTV를 추가 설치할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

농식품공무원교육원

- ① 「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」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시 이행해야 할 의무를 철저히 이행 요구 (통보)
- ② 「농식품공무원교육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규정」중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 및 운영실태 점검의 ‘주기적’ 기준을 명확히 하여 점검을 실시하고, ‘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 가이드라인’과 상이한 CCTV 추가 설치에 대한 의견조회 규정 현행화 요구 (개선)

6	식재료 계약 특수조건(검수)·자격요건 확인 미흡		
처분요구	통보	관계기관	운영지원과

○ 「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」에 따라 식당에 공급되는 식자재 등의 변질 여부 및 품질, 수량을 철저히 검수하여야 하나,

-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명시된 검수사항 중 일부 식재료 공급업체 준수사항에 대해 미검수하였고
- 입찰시 제시한 식재료 공급업체의 참가자격 중 일부조건* 미확인

* 위생적인 냉장보관 시설 보유여부, 온·습도 유지가 가능하도록 환기시설 및 방충·방서시설 보유여부 등

농식품공무원교육원

구매계약 특수조건 등에 명시되는 검수사항에 대해 철저히 검수하되, 타 기관 사례 등을 참조하여 검수 사항을 포함한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, 식재료 공급업체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해당 서류 점검, 현지 방문 등을 통해 철저히 확인 요구 (통보)

7	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규정 미흡		
처분요구	권고, 통보(2)	관계기관	교육기획과

○ 매년 교육훈련계획수립 시 「교육원 학칙」에 따라 농식품부, 지자체, 유관기관 등 대상 수요조사 실시 및 각 기관 의견을 검토하여 수립하고 있으나,

- 보다 실용적이고 전문적으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교육운영 평가결과 및 외부 전문가 의견 반영 절차 필요

- 「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」에 따라 교육훈련계획에 교육훈련 성적의 평가방법, 교육비를 포함하고, 이를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교육훈련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, 2023년 교육훈련계획에 미포함(단, 교육비는 징수계획 확정 후 홈페이지에 별도 공개)
- 교육수료자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 등을 반영한 과정별 종합점수는 다음 교육 계획수립 및 운영, 차년도 교육훈련계획 시 참조 등 중요 사안이나, 세부 산출방식을 규정하거나 내부 방침(원장결재)을 받지 않음

농식품공무원교육원

- ① 교육훈련계획 수립 시 전년도 교육운영 평가, 외부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수립토록 「학칙」 관련 규정 개정 요구 (권고)
- ② 교육훈련계획에 훈련성적 평가방법, 교육비 포함 조치 요구 (통보)
- ③ 과정별 종합평가 산출방식을 명확하게 하여 관련 규정에 규정하거나 내부 방침 받도록 조치 요구 (통보)

8	교육운영심의회 운영 미흡		
처분요구	통보(2)	관계기관	교육기획과

- 매달 교육운영심의회에 전월 운영한 교육과정 결과(교육인원, 만족도 등)를 보고하고 있으나,
 - 동 심의회에서 당초 의결한 계획(안)과 비교하여 변경 운영하게 된 사유, 내용 등을 포함하여 보고 필요(보고안건 내용 추가)

- 교육운영심의회에 필요 시 민간전문가를 참여토록 하고 있으나, 민간전문가 참여가 필요한 경우를 정한 바 없이 연간 몇 회 등 민간전문가 참여를 형식적으로 하고 있음

농식품공무원교육원

- ① 교육운영심의회 교육과정 운영결과 보고 시 당초 의결한 계획(안)과 다르게 운영된 과정, 사유 등을 포함하여 보고 조치 요구 (통보)
- ② 교육운영심의회에 민간전문가 참여가 필요한 경우를 정하되, 중요 안전의 상정 및 발굴 노력 등 민간전문가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조치 요구 (통보)

9	현업적용도 조사 활용 미흡		
처분요구	통보	관계기관	교육기획과

- 「교육원 학칙」에 따라 과정별 교육효과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현업적용도 조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교육운영심의회에 보고하여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에 반영하여야 하나,
 - 조사 결과를 교육운영심의회에 보고하지 않고, 과정장들이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다음 교육과정에 반영여부 결정

농식품공무원교육원

현업적용도 조사 결과를 교육운영심의회에 보고하여 심의회에서 교육과정의 개선사항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업적용도 조사 결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안 마련 요구 (통보)

10	이러닝 운영 미흡		
처분요구	통보, 개선	관계기관	전문교육과

- 「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이러닝 운영지침을 수립하고 교육계획, 평가방법, 수료기준, 운영요원 및 강사선임 등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하나,
 - 이러닝 교육신청 및 수료기준, 평가 방법 등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, 운영요원, 진도관리 등 구체적인 운영지침은 마련하지 않음
- 이러닝 강사에 대한 강사수당 지급기준이 모호한 주당 활동기준으로 규정되어 장기간 지급되지 않고 있는바,
 - 이러닝 강사수당 지급기준이 합리적인지 검토 필요

농식품공무원교육원	
① 이러닝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「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」(인사혁신처 예규 제157호, '23.6.30.) 제8호 나목에 따라 이러닝 운영지침 수립 요구 (통보)	
② 이러닝 강사에 대한 강사수당이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계량화된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 요구 (개선)	

11	외부 전문강사 학사관리시스템 관리 미흡		
처분요구	통보	관계기관	전문교육과

- 「교육원 학칙」에 따라 강사관리(프로필, 출강정보, 원고료 징수 등), 교육계획, 교육운영 등을 학사관리시스템으로 운영·관리하여야 하나,

- 외부 전문강사로 선발된 후 출강 이력이 없는 외부 전문강사 22명 중 19명(86.4%)은 학사관리시스템에 미등록

농식품공무원교육원

외부 전문강사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출강 이력에 관계없이 학사관리시스템에 전문분야, 희망과정 등을 등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 요구 (통보)

12	태양광 발전설비 증설 및 상계거래 활용으로 전기사용료 대폭 절감		
처분요구	통보(모범사례)	관계기관	운영지원과

○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태양광 설비 교체·용량 증설비를 무상 지원받아 교육원 전체 전기사용량의 67%, 65백만원 이상의 전기요금을 절감하였고

- 잉여 생산 전기는 상계거래제도*를 활용하여 매년 45백만원 전기요금 추가 절약이 기대되고 있음

* 신·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한 고객이 자가소비 후 잉여전력을 한전에 공급하고 그 잉여전력을 고객이 한전으로부터 공급받은 전력량에서 상계

○ 이러한 사례는 나주혁신도시 이전기관 중 교육원이 유일하며,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 50% 조기달성 및 2022년 농식품부 소속·산하기관 여름철 에너지절감 실적 1위 달성

농식품공무원교육원

태양광 발전 설비 증설 및 상계거래 활용으로 전기 사용량 대폭 절감한 관련 업무 담당자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 선정 추천 요구 (통보-모범사례)